



공공 기관의 조각상을 찍은 사진을 웹 사이트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올리는 것은 저작권법에 어긋나는 것일까? 스웨덴 위키미디어 패소 사건으로 보는 공공 예술품의 저작권 유무와 미국의 사례를 비교해본다.

스웨덴 대법원, 위키미디어에 패소 판결

위키미디어가 스웨덴 공공 기관의 조각상 등을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스웨덴 대법원은 스웨덴시각저작권협회(BUS)가 위키미디어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위키미디어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스웨덴 영자 매체인 <더 로컬(The Local)>이 보도했다. 이 사건은 스웨덴시각저작권협회가 스웨덴 공공 미술품의 사진을 작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한 위키미디어를 상대로 스톡홀름 지방법원에 제소하면서 시작되었다.

스웨덴시각저작권협회는 미술가, 사진작가, 삽화가와 디자이너 등을 대표하는 단체이다. 위키미디어는 온라인 백과사전으로 이름난 위키 피디아를 운영하는 비영리재단으로 교육적 콘텐츠를 수집·개발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 세계에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유 저작물과 위키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를 개발·유지하고, 이러한 프로젝트의 콘텐츠 전체를 무료로 대중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스웨덴 대법원은 “스웨덴 법은 대중에게 공공 미술품에 대한 사진 촬영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진을 데이터베이스에서 무료로

제한 없이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적지 않은 상업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저작권자는 이를 보호받을만한 충분한 권리가 있다. 위키미디어가 상업적 목적을 가지는지 아닌지에 따라 이것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라고 전했다.

위키미디어 스웨덴 지사장인 안나 트로버그(Anna Troberg)는 판결 후 “매우 실망스럽다. 시대착오적이고 경직된 저작권법 해석이다. 유럽 인권재판소의 권고에도 반한다”라고 말했다. 영국에 기반을 둔 공개 권리그룹의 사무처장인 짐 킬록(Jim Killock)은 “디지털 세상에서 보통의 사진가에게는 전경 촬영의 자유는 필수적이다. 빌딩이나 공공 미술품이 저작권의 범위에 있다는 것을 모를 수 있다. 저작권을 이유로 그런 사진을 찍지 못하게 되면 저작권은 웃음거리가 되고 오명을 뒤집어 쓸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공미술품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저작권의 제한과 관련이 있다. 스웨덴의 문학·예술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에는 저작권 제한에 관한 규정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영미 법에서는 공정 이용을 일반 조항으로 가지고 있으나, 대륙법에서는 열거 조항의 형태를 취하는데 스웨덴은 대륙법계 체계를 따르고 있다. 이 법 제2장(저작권의 제한)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판결과 관련된 조항은 저작권 제한에 관한 통칙인 제12조, 미술 저작물 및 건물의 사용에 관한 제23조, 제24조 등으로 보인다. 공공미술품을 사진 촬영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스웨덴 대법원의 위 판결을 보면 개별적인 저작권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본 것과 같다.

공정 이용 법리로 저작권을 제한하는 미국의 사례

저작권 제한을 열거적으로 규정한 스웨덴과 달리, 공정이용 법리로 저작권을 제한하고 있는 우리나라나 미국이었다면 어떤 판결이 선고되었을까? 조심스럽지만 스웨덴 대법원과 같은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공정이용이 인정되면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않아야 하는데 무한정 사용할 수 있

는 데이터베이스에 올리면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영향 받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원작과 구별되는 ‘변환’이 있으면 공정이용에 해당될 수 있는데 사진의 경우에는 공공미술품을 보고 그린 회화와는 달리,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요소가 가미되는 ‘변환’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

미국에서 이러한 권리를 주장한 최초의 사례는 대지미술가로 알려진 크리스토(Christo)와 장 클로드(Jeanne Claude) 부부로 이들은 2005년 뉴욕 센트럴 파크에서 16일 간 <문(Gates)>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크리스토와 장 클로드의 변호사인 스콧 호즈(Scottes Hodes)는 자신들의 사진을 판매하려고 하는 사진작가들에게 허락 없는 이미지 사용을 정지하라는 요청서를 보냈다. 이들은 뉴욕시의 비영리 도시 생태 기구를 위한 펀드 모금을 돕기 위해 사진 이미지 제작 허가권을 주고 서명한 포스터를 팔아왔기 때문에 승낙하지 않은 사진의 판매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입을 수 있었다. 변호사들이 보내는 통상적인 문서보다 부드러운 편이었지만 그동안 화석 지대에 있던 권리를 주장한 것으로 서 특별한 주목을 끌었다.

시각예술가를 위한 법률 가이드의 저자인 태드 크로포드(Tad Crawford)는 “25년 간 주장하지 못했던 작가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며 작가의 권리 운동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뉴욕의 저작권 변호사인 존 코겔(John Koegel)은 공공미술품을 보고 그린 회화의 경우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요소가 가미되는 창작성이 인정되면 공정 이용으로 볼 것이지만, 사진의 경우에는 변환이 많지 않아서 공정 이용에 해당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음은 공정이용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원작과 구별되는 ‘변환’이 필요하다는 미국의 판례이다. 핑크록 그룹 그린 데이(Green Day)는 삽화가 드렉 셀트저(Dereck Seltzer)의 일러스트를 변형하여 뮤직비디오 속 배경 이미지로 사용했다가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당했다. 2011년 로스앤젤레스연방지방법원은 공정이용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셀트저의 소를 기각하였다. 그린 데이의 변형을 원작과 구별되는 새로운 정보, 새로운 미학적 가치, 새로운 통찰력과 이해를 지닌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셀트저 측은 항소했으나 제9항소소회법원은 원심을 유지했다.◆